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 진선미 의원실 공동주최 심포지엄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깊어 가는 가을에 가정 마다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복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는 자녀 양육비와 관련한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일차적 의무로 부모는 자신의 수입이
최저 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나누어 자녀를 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일정기준의 생계비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같이 일률적으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결국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는
미성년 자녀 양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육비채권의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어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 1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 배 희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 현 천 욱

목 차

| 주제발표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고 ····· 7
배 인 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센터장7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3
이 은 영 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무차장

| 토론발표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 41
이 동 희 서울가정법원 판사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관한 토론문 ····· 45
박 복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토론문 ····· 53
노 지 선 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지원부장

민사집행에서 왜 양육비채권에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가 ····· 59
오 영 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법무사

상담과 소송구조를 통해 본 양육비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문제점과 제언 ····· 67
최 수 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 주제발표 ❶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고

배 인 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센터장

Ⅰ. 들어가는 말

이혼을 해도 자녀의 부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처음부터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지급을 기대하지 않았던 양육부모라면 몰라도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한다면 다행이지만 자녀를 곁에 두고 돌보지 않는 비양육부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양육비 지급을 소홀하게 여기기 마련이다. 심지어 이혼 전 배우자에 대한 나쁜 감정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이행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사집행법에 있는 강제집행제도 외에 가사소송법상 간접적 집행 확보 방안으로 이행명령 및 이행명령 위반시에 따르는 감치, 과태료 제재 등을 규정하였으나, 그 실효성이 예상보다 미미하자 종전의 양육비 확보 제도를 한 단계 뛰어넘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2009. 가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하여 양육비 지급의 확보를 위해

가사소송법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는 미성년 자녀(만18세 미만, 취학중인 경우 만18세 포함)를 배우자 없이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약 57만 가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그 중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비율은 약 83%,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경우는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혼 후에는 양육비를 그런대로 지급하다가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는 사례도 많은데, 양육비 지급판결 후,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비율은 2010년의 양육비 이행실태조사에서는 26.3%였지만,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는 24.3%로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에 새로운 이행확보 방안을 도입하기보다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 3. 25.부터 시행되었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5. 3. 25.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원하였다.

이제 다시 비양육비부모로부터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된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 예를 들어 양육비 지급을 해태하는 경우 프랑스와 같이 형사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거나 미국처럼 여권이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그보다 현행 제도가 양육비 이행확보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제도 개선이 더욱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비양육부모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이 몹시 어렵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양육비 집행이 곤란하다면 그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양육부모가 가장 쉽게 양육비채권을 집행하는 방법은 양육비채무자인 비양육부모의 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면 실무상 그 집행을 할 수 없다. 이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본다.

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1. 의의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에,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즉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장래의 정기금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1)]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하나(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2)])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단서는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에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인 양육비채권의 압류를 특별히 허용하였다.

2. 민사집행법의 적용과 문제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중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규정, 성질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의 민사집행규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3)] 제4호가 적용되어 매월 지급받는 급여(본봉 및 제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뺀

---

1) 가사재판연구(2017), 사법연수원, 32쪽

2) 제40조(집행개시의 요건) ①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3)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잔액의 1/2 및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현재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현재 월 300만 원 이상으로서 300만 원에 월 급여채권의 1/2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의 1/2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최저 150만 원에서 300만 원[4]까지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직접지급명령도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1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비양육부모와 150만 원의 수입으로 초등학생 자녀1 명을 양육하는 양육부모가 있고, 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참작하여 비양육부모에게 매 월 약 4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한 경우에 양육비채무자가 그 이행을 계속 하지 않아도 양육비채무자의 급여로부터 직접 지급받기 어렵다. 1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임금채권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수단으로서 소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헌법재판소 2008. 11. 27. 2007헌바36 결정) 위와 같이 특별히 보호되고 있다. 임금채권에 대해 위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늘어날 수 있지만 간단하게 3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임금채권에 대해 압류상한선이 있다는 것은 그 근로자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생활하는 가족까지 고려된 것이다. 당해 근로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위 법에 따라 그 생존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미성년자녀가 부모의 이혼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이제 그 보호범위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임금을 받는 채무자의 생존권을 고려하여 그 1/2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정은 소득이 적은 급여생활자의 생존권은 위협하는 반면 고소득 급여생활자에게는 유리하다는 문제가 있어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새로운 압류금지 기준으로 추가한 것도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150만 원의 임금을 받는 경우 그 전액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은 또 다른 압류금지채권으로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채권을 들고 있다(제246조 제1항 제1호). 임금채권처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거론하고 있다. 부양료채권의 대표적인 것이 양육비채권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결국 양육비채권과 임금채권은 모두 압류가 금지되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양육비채권과 임금채권이 상충할 경우 어느 채권이 우선해야 하는가? 사회법이 지향하는 근로의 대가의 최우선 보장이라는 요청에 기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관련법상의 특별한 고려 내지 배려는 미성년자녀의 양육권보장이라는 요구와 적정선에서 절충 내지 조화를 요하지만, 현행 관련 법 규정들은 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5]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임금채권의 직접, 전액 지급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이다. 이런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일정 금액의 급여 채권에 대해 전액까지 압류가 금지된다는 것은,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 문제라고 할 것이다.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일부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최근 퇴직공무원으로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채무자의 연금채권에 대해 매 월 70만 원의 양육비채권이 있는 양육비채권자가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규정으로 인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

5) 최윤희, 임금채권에 대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고찰-노동법상의 임금채권보호원칙과의 바람직한 조화 내지 발전방향을 모색하면서-, 노동법연구 제34호(2013),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55쪽

반한다는 청구하였으나 기각(합헌 4인 : 위헌 5인)된 사례가 있다.[6] 이에 대해 살펴본다.

Ⅲ.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6헌마260 결정

1.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압류금지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문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본문 중 "압류금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00. 3. 30. 98헌마401등). 이 선례의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압류제한조항은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만의 압류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공무원연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확인한 규정에 불과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압류금지조항과 압류제한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0. 3. 30. 98헌마401등 결정에서 압류금지조항의 개정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18년이 지나도록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균형있게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입법되지 않았다. 여전히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생계비 이상의 연금급여를 받으면서 채무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어려운 처지의 채권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압류금지조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6)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6헌마260 결정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유남석의 압류금지조항에 대한 위헌의견

자녀양육권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임과 동시에, 자녀가 정상적인 사회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하는 부모의 헌법상 의무이고, 부모의 양육에 따라 자녀가 누리는 이익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법익이다.

양육비채권은 부모가 실제로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모의 공동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자녀 양육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재산권으로서, 자녀양육권과도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

공무원연금법은 수급권자 본인 뿐 아니라 그가 부양하여야 할 가족의 생활안정도 도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압류금지조항의 입법목적에는 수급권자의 자녀 등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수급권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와 양육대상인 자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압류금지조항은 수급권자 본인과 그와 같이 사는 가족만의 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양육대상인 자녀의 생활보호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육비를 법원이 정할 경우 부모의 소득 등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므로, 다른 채권에 비하여 양육비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무원연금 수급권에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수급권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는 적다.

압류금지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생활보호와, 양육비채권자 및 양육대상 자녀의 법익 사이의 균형이 준수되었는지는 압류금지조항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와 있을 때의 법익의 보호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압류금지조항이 없더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은 보호를 받고, 양육비채권의 금액도 수급권자의 생계나 복리에 위해가 될 정도로 과다한 경우가 발생하기 어렵다. 반면, 압류금지조항은 공무원연금수급권 전부에 전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법원이 조정할 여지도 두고 있지 않으며, 연금액이 생계비를 넘어서는 다액이라도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에 가해지는 불이익의 정도는 심하다. 특히,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 및 가족생

활의 보장은 미성년의 자녀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자녀양육을 보호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고, 양육비채권은 양육의 필수불가결한 물적 기초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부모가 헌법상 자녀양육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의 제한은 규범적 측면에서도 중대하다.

이와 같이, 압류금지조항 중 집행채권이 양육비채권인 경우는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다만, 압류제한조항은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를 제한할 뿐이어서, 수급권자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주장

공무원연금법의 압류금지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급여가 지급되는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수급자는 손쉽게 급여지급통장을 바꿀 수 있으므로 매달 지급받아야 하는 양육비채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다. 급여지급통장을 특정할 수 있더라도 압류제한조항으로 인해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7]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압류할 수 없어 양육비채권을 지급받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청구인은 위 법률 규정으로 인하여 딸을 양육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딸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성질상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였다.

---

7)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현행 150만원)

이하 4호 ~ 16호 생략

3. 압류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선례의 내용

헌법재판소는 2000. 3. 30. 98헌마401 등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는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일신전속성이 강하고 사적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급여수급권에 대하여만 압류를 금지할 뿐 급여를 받은 이후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급여에 대하여 전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또 공무원연금법이 민사소송법의 일반 규정과 달리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입법자가 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압류금지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다음과 같이 압류금지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공무원연금법이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한 근본취지는 채무자인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u>채무자의 사정은 천차만별이고 채권자의 생활상황이 오히려 채무자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획일적으로 압류를 전액 금지하면 채권자의 희생 아래 채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u> 이와 같은 결과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헌법정신에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공무원연금법에도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8])의 규정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압류금지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8)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는 것이 바람직하다.”

4. 2016헌마260 결정 반대의견의 시사점

2016헌마260 결정(이하 ‘대상 결정’이라 한다)에서 헌재가 스스로 고백하는 바와 같이 위 선례와 같은 결정이 선고된 때로부터 18년이 지났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여전히 입법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수급권자가 생계비 이상의 연금급여를 받으면서도 채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채권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연금의 압류금지조항의 입법목적은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해당 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 등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 나아가 부모는 자녀가 정상적인 사회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볼 헌법상 의무가 있고, 부모의 양육에 따라 자녀가 누리는 이익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법익이다.

더구나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비양육부모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금액을 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연금 수급권 전부에 전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법원이 조정할 여지도 두고 있지 않으며[9]) 연금액이 생계비를 넘는 경우에도 압류를 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비양육부모의 생계비를 넘는 부분에서 양육비를 정하였을 것임에도 급여 전부에 대해 전혀 압류를 하지 못하는 것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입법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

9)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현실적인 의미가 없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에 따라 법원이 임금채권 중 일부를 조정하여 압류명령을 하였다거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압류하였다는 예를 들어본 바 없다.

Ⅳ. 압류금재채권 규정의 개정 제안

1.일본의 민사집행법[10)]

일본에서는 양육비채권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더 좁혀서 양육비 집행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있다. 즉 양육비 채권의 경우에는 급료채권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3/4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1/2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감축되고, 다만, 사정에 따라 재판소가 신청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도 한다(일본 민사집행법 제153조).

이와 같은 내용이 가능한 것은, 표준적인 세대의 필요생활비를 감안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가 정하여지는데, 표준적인 세대의 필요생활비에는 피부양자 등인 집행채권자의 필요생계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양육비 등 채권은 그 성격상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부분에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 또한, 양육비는 양육비채권자의 필요생활비와 채무자의 자력이 주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 이미 고려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압류금지채권의 경우에는 양육비가 꼭 정기금일 필요는 없고, 일시금 지급이나 불확정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일본 민사집행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11)]

제151조(계속적 급부의 압류) 급료 그 밖의 계속적 급부에 따른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수를 한도로 압류 후에 받을 급부에 미친다.

제151조의2(부양의무 등과 관계된 정기금채권을 청구한 경우의 특례) ① 채권자가 다음에 정하는 의무와 관계된 확정기한의 정함이 있는 정기금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일부에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정기금채권 중 확정기한이 도래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도 채권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

10) 김윤정, 양육비 이행의 확보 방안과 관련한 논의 : 개정 가사소송법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를 중심으로, 가사재판연구(2011), 480쪽에서 인용

11) 이호원 교수님께서 민사소송법학회에 제공해주신 자료를 참고하였다.

1. 민법 제752조의 규정에 따른 부부간의 협력 및 원조의무
2. 민법 제760조의 규정에 따른 혼인으로부터 생기는 비용의 분담의무
3. 민법 제766조(동법 제749조, 제771조 및 제7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자의 감호에 대한 의무
4. 민법 제877조 내지 제880조의 규정에 따른 부양의무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개시한 채권집행에서는 각 정기금채권에 대하여 그 확정기한의 도래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급료 그밖에 계속적 급부와 관계된 채권만을 압류할 수 있다.

제152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에 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에 받을 급부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그 액수가 표준적인 세대의 필요생계비를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한 액수를 넘는 때에는 정령에 정한 액수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채무자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로부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받는 계속적 급부에 대한 채권
2. 급료, 임금, 봉급, 퇴직연금 및 상여금 또한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급부에 대한 채권

② 퇴직수당 및 그 성질을 갖진 급부에 대하여는 그 급부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전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의무에 관련된 금전채권(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청구하는 경우에 전 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전 2항 중 「4분의3」은 「2분의 1」로 한다.

제153조(압류금지채권의 범위의 변경) ① 집행재판소는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 및 채권자의 생활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또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집행재판소는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채권을 압류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따른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재판소는 그 재판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함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지급 그밖에 급부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압류명령의 취소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일본은 채무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3/4까지 압류가 금지되지만 양육비채권에 대해서는 1/2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법률 개정안

임금채권에 대해 일정 부분 압류를 금지하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고, 양육비 채권의 특수성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한다.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 제1호에서 정한 청구권에 기한 압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글에서는 직접지급명령과 관련된 압류 금지의 문제점을 거론하였기에 제4호의 개정안을 제시하지만, 양육비채권으로 압류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도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조항에도 단서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3. 개정안을 위한 변명

앞서 든 예와 같이, 똑같이 150만 원의 수입으로 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한 부모가 수개월 계속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에게 지급을 여러 번 요청한 후 법의 힘을 빌려야겠다고 결심하고 상담을 하였는데, 민사집행법 규정으로 인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생각이 들 것인가.

임금채권의 일정한 범위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입법 목적은 충분하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입법 목적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이고, 가족에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도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위와 같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이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의 규정만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는 임금 등 채권의 압류금지규정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양육비 채권자가 임금 등 채권의 압류 필요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거나 우리 사회에 임금 채권은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도 조정될 수 없다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신성불가침이라 여겨지는 임금채권의 압류금지 규정에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은 입법자들이 주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서 압류금지규정을 살펴보면 임금 등 채권의 1/2 부분을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 규정의 단서 조항이 임금 전부의 압류까지 금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단서의 효력을 제한하는 방식, 즉 양육비 채권이 임금 등 채권의 1/2을 상회하는 부분만 압류한다면 이것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원래 임금 등 채권의 압류금지 목적은 임금 등 채권자의 미성년자녀의 생존까지 고려한 것이다.

이런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임금 등 채권의 1/2까지 압류하되, 만약 비양육부모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압류범위를 축소하여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그 사정을 소명하여 압류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발제자의 생각과 비슷한 박복순 박사의 견해를 소개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150만 원은 2012년에 공표된 4인 가구의 최저생계

비에 근접한 액수이다(2014년 1월 기준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630,820원임). 이에는 피부양자의 필요생계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양육비 등 채권은 그 성질상 압류금지채권부분도 대상으로 하여 실현하여야 한다. 이혼사유 중 경제적 원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양육비 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에 근접하는 100만원 정도로 낮추고, 채무자의 사정 변경청구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12]

V. 마치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할 임금채권에 대해 직접지급명령이 가능한 점과 관련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용이고, 크게는 양육비채무자의 필요생계비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비용인 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력이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같기 때문에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경합된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점,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볼 것이다.[13]

지난 해 접수된 이혼소송 사건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을 모두 포함해 전체 이혼 건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난 해 전국 시군읍면에 접수된 이혼신고 건수는 10만7523건으로 한해 전(10만8853건)보다 1.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14]

---

12) 박복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직구성 및 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2014), 여성가족부, 146쪽

13) 김윤정, 양육비 이행의 확보 방안과 관련한 논의 : 개정 가사소송법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를 중심으로, 가사재판연구(2011), 456쪽 각주 7) 참조

14)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2510301674953

이혼을 하는 부부의 나이가 많아지고 황혼이혼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혼인지속기간이 15년이 안 된 부부의 이혼은 여전히 과반수가 넘고 이들이 이혼하는 경우 만약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자녀의 양육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들은 대부분 가난해진다. 주거지를 나눠야 하니 이혼 전보다 작은 집으로 이주하거나, 두 가구로 나뉘면서 필요한 생활비가 증가해서 상대적으로 자녀에게 투입되는 양육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혼 전후의 양육환경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양육비가 정해지더라도 양육비가 원활하게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를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여러 제도의 도입이 모색된다.

모쪼록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압류금지채권의 이념을 유지하면서도 미성년 자녀에게 필수불가결한 양육비가 제대로 집행되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소망한다.

| 주제발표 ❷ |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은 영

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무차장

〈목 차〉

Ⅰ. 서론

Ⅱ. 외국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관한 입법례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5. 검토

Ⅲ.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의미와 취지
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3. 소결

Ⅳ. 현행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문제점
1.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점
2. 양육비채권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규정한 점
3.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실효성
4.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의 한계
5. 소결

Ⅴ. 현행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선방안

I. 서론

자녀의 양육 및 양육비 부담은 부부가 혼인 중에는 물론이고, 이혼 후에도 부모의 의무로서 부부 쌍방 모두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이로 인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위와 같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자녀 양육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의 제재를 도입하자는 논의[15]도 진행 중이다. 또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인상[16]하는 방안과 감치 집행 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결국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를 통해서도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글에서는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현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규정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외국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를 살펴보고, 2015년 논의되었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15) http://v.media.daum.net/v/20180907063005350?f=o

1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일자 2017. 7. 14., 의안번호2008000)

Ⅱ. 외국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관한 입법례

외국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는 양육비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관이 담당하면서 필요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자로부터 추심하는 체제와 양육비 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원의 관장사항으로 하여 채권자가 의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받아 이를 양육비에 충당하도록 하는 체제로 구별할 수 있다. 대략 영국과 미국이 전자에 속하고, 독일이나 일본이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제국들의 경우에는 일찍이 국가가 양육비를 선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그러한 구별은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7]

1. 영국

영국에서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는 행정기관인 CSA(Child Support Agency)가 결정한 양육비를 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 자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부모가 이혼할 때 법원에서 원만하게 양육자의 결정이나 양육비가 결정되고, 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SA가 나서게 된다. 이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임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법이다. 이는 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지급할 소득에서 일정액을 직접 CSA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효과가 없으면 법원이 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은행이나 주택공사에게 채무상환명령을 하여 그 재산으로부터 추심하게 하거나 의무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심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CSA는 치안판사 법원(잉글랜드, 웨일즈)이나 보안관(스코틀랜드)를 통하여 의무자에 대해 6주간 감치에 처하거나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 내지 보유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고, 심지어 여권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한다.[18]

---

17) 김연,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소송법적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15권 제1호, 2011, 89면.

18) 여성가족부, 아동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연구, 2011, 43~45면.

2. 미국

가. 급여공제제도

미국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자녀양육비 이행확보제도로서 임금이나 기타 소득에서 공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여공제제도를 입법하고 있다. 급여공제제도는 일단 개시되면 정기적인 수입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9]

1984년 가족부양법에 의하면 공제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1개월의 양육비 체납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그 후 1988년의 가족부양법에 의해 체납조건이 없어져 양육비는 모두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급여에서 공제되게 되었다. 그 후 1996년의 개인책임 및 취업기회조정법(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PRWORA) of 1996)의 제정으로 각 주는 양육비의 수령과 분배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에 의해 급여공제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것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양육비가 이 기관에 의하여 지급된다. 이렇게 하여 양육비의 지급업무를 주(州)기관으로 일원화 함으로써 지급상황의 파악도 쉽게 되고, 체납에 대한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징수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양육비명령을 취득하기 위하여 통상의 사법시스템 보다 간단한 '행정적 시스템' 또는 '준사법시스템'으로 불리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법정에서의 법관에 의한 프로세스를 요하지 않고, 행정적인 프로세스에 의하여 양육비 명령이 발부된다.[20]

나. 선취특권과 압류제도

선취특권은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비점유적

---

19) 박복순, "자녀 양육비 확보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4, 68면; 김유미,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법학 [2] , 1999, 274면.

20) 전혜정,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제17집 제1호], 제주대 법과 정책연구소, 2011. 223~224면.

권리로, 양육비 명령이 발하여지고 비양육부모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선취특권은 종종 비양육부모가 재산의 점유권은 보유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선취특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잠재적 권리로 불리기도 한다. 후속 매수인과 임대인은 권리나 증서의 이전과정 동안에 선취특권의 존재를 통지받기 때문에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부 주들은 다른 선취특권보다 자녀양육비 선취특권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21]

3. 독일

가. 양육비선급제도 도입

독일은 1979년부터 양육비선급법(Unterhaltsvorschussgesetz)을 제정, 시행하여 양육친이 자녀양육을 위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육비 선급제도는 195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폴란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22] 이 제도는 비양육친이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주정부가 양육친에게 일정한 액수까지 부양료를 선지급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 부양료 청구권의 이전

양육비선급을 받은 자녀가 비양육친에 대하여 부양료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자녀의 부양료채권은 주정부에 이전된다(독일 양육비선급권 제7조 제1항). 이에 따라 아동복지기관은 양육비 구상을 위한 소송제기에 앞서 먼저 부양의무자의 수입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독일 양육비선급권 제7조 제1항 제1호).

부양료청구권의 이전은 실제로 양육비가 선급되는 때에 즉시 이루어지며, 법률규정에 따라 직접 이전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 의한 채권양도 등은 필요하지 않다.[23]

---

21) 박복순, 앞의 논문, 70~71면.

22) 정현수, “이혼시 자녀양육비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제19권 제1호], 2005, 300면.

다. 선급의 집행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12세에 달할 때까지 최장 72개월 동안 선급된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재청구를 할 경우 역시 3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독일 양육비선급법 제1조 제1항, 제3조).

양육비선급청구는 자녀와 동거하는 모의 일방 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신청한다. 독일에서는 양육비선급집행기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각 주에 위임하고 있는데, 각 주는 아동복지기관을 양육비선급 집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24]

4. 일본

일본에서는 계속적으로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채무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4분의 3까지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양육비 등의 채권에 대해서는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5]

5. 검토

영국과 미국은 행정기관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채무자에게 추심하는 방법으로, 양육비 이행에 대한 강력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원을 통해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채무자에게 이행을 받아 양육비에 충당하도록 하여 양육비채무자가 스스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엔 강제집행에 의할 수밖에

---

23) 김상용,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한 입법방향”, 한국여성민우회, 2002. 33면; 고금자,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상 문제점과 부모재산분여제도 신설에 관한 연구” , 2008, 79면.; 이봉림, “이혼시 자녀양육비 확보제도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제21권 제2호] 2009, 111면.

24) 윤덕경·장영아, “가족법상 친권·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 199면; 고금자, 앞의 논문, 79-80면

25) 김연, 앞의 논문, 94면.

없다.

독일의 양육비 선급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로 실효성이 높겠지만, 그 재원은 대부분 국가재정에 의존해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재정적인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에 관한 법적체계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압류할 수 있는 범위를 일반채권과 다르게 규정한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Ⅲ.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의미와 취지

민사집행법은 급여채권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26] 제4호의 단서에서 압

---

26)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류금지 최저금액과 압류금지 최고금액을 정하고 있다. 제4호 단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월 150만원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이에 따라 월 소득 150만 원 이하인 급여생활자는 모든 급여가 압류금지채권이 된다. 또한 제4호 단서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월 금 300만 원 이상으로서 위 「금 300만 원」과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위 금 300만 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시행령 4조). 위 규정에 따르면, 월 금 6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압류금지되는 금액은 1/2이 아니라 "300만 원 + [{(급여채권/2)-300만 원} /2] 이 된다."[27]

위와 같이 고소득 급여생활자의 경우 압류금지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획일적으로 300만 원 이상을 모두 압류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여, 근로자의 생계뿐만 아니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사회적 생산력의 감소가 초래될 것을 고려하고 있다.

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28]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 ② (생략) 〈신 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확보를 위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 ---------.

27) 김능환, 민일영, "주석 민사집행법" 제3판, 2012, 601~602면.

2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일자 2015. 10. 27.- 의안번호 1917394)

채권자가 양육비 확보를 위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압류금지채권 중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 법안의 주요내용이다.[29]

최근 이혼 후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청구소송이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양육비채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현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가 너무 넓어 양육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양육비 집행을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위 법안을 제안한 이유이다.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익적 측면에서 양육비채권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위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동 규정은 집행법원이 채권자·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의 생활형편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압류금지범위를 확장하거나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금지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화시켜 압류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녀의 적절한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채무자가 보유한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급여채권 등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도 있으므로 개정안의 양육비 확보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나아가 양육비 채무불이행시 감치명령 등으로도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민사집행법은 급여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채권자가 보유한 이행청구권의 만족과 근로자의 기본적 생계보장이라는 상

29) 위 법안은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2015. 10. 2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394] 으로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에 의해 폐기되었다.

충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양육비채권자의 양육비 확보라는 소명이 있으면, 예외 없이 급여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어 급여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해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현행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양육비채권자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된 급여채권에 대한 사실상 독점적인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교육비, 생계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록 양육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급료, 임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소결

가. 검토의견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채권자의 신청과 이에 따른 입증이 있어야 하고, 결정을 받을 때까지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감치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압박 수단이 될 수는 있더라도 양육비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행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제도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하여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 경비인 양육비채권의 보호성이 크기 때문에, 급여채권에 대한 현행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정을 통해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계속적으로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채무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4분의 3까지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양육비 등의 채권에 대해서는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0] 즉, 채무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의 2분의 1에 대하여 압류금지를 하는 비율은 일

본과 우리나라의 규정이 같지만, 일본은 일반채권보다 양육비채권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양육비채권을 일반채권보다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나. 논의 방향

신중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양육비채권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 양육비채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현행 민사집행법상 양육비채권을 일반채권과 구별 없이 압류금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알아보려 한다.

특히, 압류금지채권 중에서 급여 및 퇴직금채권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자가 아닌 경우의 양육비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관하여(이하 '급여채권 등'이라 한다)도 양육비 확보를 위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8호).

IV. 현행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문제점

1.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점

가.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취지

현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은 공익이라는 사회정책적 근거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민사소송법 제246조). 강제집행법은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이익과의 조화 및 채무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도의 생활보장

30) 김연, 앞의 논문, 94면.

이라는 목표에서 압류를 통하여 생활 곤궁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압류제한을 규정한 것이다.[31]

나. 양육비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희생시키는 점

압류금지 규정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압류채권자를 희생시키면서 집행채무자를 보호하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압류금지의 취지를 확장해석 하여서는 안 된다. 어느 범위에서 채권자의 희생으로 사회정책이 수행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법정책적 문제로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지위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32]

특히, 양육비는 자녀들의 생활과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부모는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담한다.[33] 양육비채권은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경비여서 양육비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육비채권자를 희생시키면서 채무자만을 보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양육비채권의 경우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취지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양육비채권자의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양육비채권의 경우에는 법정책적 차원에서 채권자를 보호하여 다른 채권보다 압류금지 범위를 축소하여 양육비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양육비채무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점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이다. 민사집행법 제195조가 정하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서 채무자 및 그와

31) 김능환, 민일영, 앞의 책, 592면.
32) 김능환, 민일영, 앞의 책, 592면.
33) 이충은, “뉴질랜드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5집, 2016, 3면.

같이 사는 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그리고 채무자 생업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물건 등은 압류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밖에도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물건이나 자동차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금지대상이다. 이와 같이 압류가 금지되는 목록들 중 16호까지의 물건 등을 빼고 나면 별로 압류를 시행할 효과가 없게 되는 것으로, 채무자는 자신의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채무이행의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길이 다 열려있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얼마든지 무용지물이 되게 할 수 있다.[34]

즉, 양육비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6조 제1항 규정과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게 되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양육비채권자는 압류금지규정에 의해 채권 만족을 얻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양육비채무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2. 양육비채권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규정한 점

가. 양육비채권 보호의 필요성이 큰 점

양육비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경비임에도, 미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액이기 때문에 수개월 분의 미지급 후에 어느 정도 금액이 축적된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밖에 없고, 강제집행을 개시하고 배당 등을 통해 실제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더 나아가 압류가 경합되는 등으로 인하여 채권액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35] 양육비채권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는 중요하다. 이러한 양육비채권의 집행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양육비채권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압류금지를 하는 것

34) 고금자, 앞의 논문, 21면.

35) 전혜정, 앞의 논문, 222면.

은 부당하다.

양육비채권의 확보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개인이 자율적으로 주던 양육비를 최우선 변제해야 할 채권에 포함시켜 회생위원을 통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제도 실무개선안을 2018. 1.부터 시행하였다.[36]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실무개선안을 통해 양육비채권을 보호하는 바와 같이, 현행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채권 규정에서도 양육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은 논의되어야 한다.

나. 양육비채무자는 채무에 관해 예측가능한 점

(1)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산정된 점

자녀의 양육비를 산정할 때, 자녀의 나이와 양육비채권자와 양육비채무자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고액의 치료비,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정하기 때문에,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통해 양육비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즉, 양육비채무자는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압류금지채권과 달리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제한 없이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도 양육비채무자에게 근로의욕에 큰 침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소득에서 양육비를 부담했어야 하는데, 양육비 지급을 지체한 경우 압류금지범위에 있다는 이유로 면제해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 양육비채무자의 사정으로 양육비 변경이 가능한 점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를 정한 이후에도 소득에 변동이 생길 경우, 양육비변경심판

36) http://www.sedaily.com/NewsView/1RUB7P929J

청구를 통해 양육비감액이 가능하다. 따라서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급여채권 등'을 전액 압류 가능하도록 규정해도 양육비채무자에게 가혹한 일은 아니다.

3.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실효성

양육비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양육비채무자가 보유한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하여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압류금지 범위감축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개인적인 궁박성, 부양의무,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되고, 채무자의 불이익과 비교된다. 즉, 획일적으로 채권자에게 미지급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구체적·개별적인 특수상황을 양육비채권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채권이 확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4.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의 한계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을 통해 미지급 양육비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도 양육비 채무의 불이행시 제재를 통하여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지만, 제재를 받고서도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양육비 채무의 불이행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과태료를 부담한다 하여도 소액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양육비채권자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따라서 감치 등을 통한 양육비 이행의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지급양육비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선방안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5. 소결

양육비채권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로, 양육비를 산정할 때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이 양육비 산정 기준이었기 때문에,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채권 등'을 압류금지채권 규정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를 통해 미지급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강제수단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통해 미지급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V. 현행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선방안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국과 미국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기관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예산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의 도입 등 효과적인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를 신설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육비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압류금지채권 규정에 대한 개정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양육비는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에 근거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금원이기 때문에, '급여채권 등'을 현행 압류금지채권의 규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양육비채무자의 경우 압류금지채권과 압류금지물건의 규정에 의해 일정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소득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심판청구를 통해 양육비 감축이 가

능하다. 반면 양육비채권은 양육비채권자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비용으로 양육비채권을 보호할 필요성은 크다 할 것이다.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실질적인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현행 압류금지채권 규정은 지나치게 양육비채무자를 보호하고 양육비채권자와 자녀를 희생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는 양육비 확보를 위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 압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의 실질적인 확보를 통해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 행	개 정 안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 ③ (생략) 〈신 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확보를 위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8호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 ----------.

참고 문헌

김능환, 민일영, “주석 민사집행법” 제3판, 2012.

여성가족부, 아동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연구, 2011.

고금자,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상 문제점과 부모재산분여제도 신설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상용,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한 입법방향”, 한국여성민우회, 2002.

김연,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소송법적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15권 제1호, 2011.

김유미,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법학 [2] , 1999.

박복순, “자녀 양육비 확보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4.

윤덕경·장영아, “가족법상 친권·양육권 및 면접교섭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

이봉림, “이혼시 자녀양육비 확보제도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제21권 제2호], 2009.

이충은, “뉴질랜드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5집, 2016.

전혜정,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 제17집 제1호, 제주대 법과 정책연구소, 2011.

정현수, “이혼시 자녀양육비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제19권 제1호], 2005.

| 토론발표 ❶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이 동 희

서울가정법원 판사

부부가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에 그 사이에 있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그것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 자녀의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는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분담하게 하고, 특히 그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37]뿐만 아니라 직접 양육하는 부모 역시 상대방에 대한 분노, 자녀에 대한 미안함, 무기력 같은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과 현재 상황의 어려움 등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법률적, 정책적으로 사회가 적절하게 개입하여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부모가 정기적인 급료를 얻고 있으면서도

37) 많은 경우에 '비양육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직접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이 아닐 뿐,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녀의 육체적, 정서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양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고, 경청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구제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주제발표에서 언급된 것처럼, 급료는 채무자 본인 및 그 현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므로, 급료에 대한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등에서 일정 부분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채권은 원래 압류금지제도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이므로,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급료채권에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양육대상인 자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느 법익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은영 변호사님께서는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제3항[38]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확보를 위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8호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하셨고,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론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발표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개정안[39]에 대한 검토보고서[4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을 개정하게 될 경우, '급료 대부분'에 대한 압류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채무자와 그의 현재 가족의 생계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또다른 비극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고, 압류금지에 관한 원칙과 예외가 사실상 뒤바뀌는 결과가 됩니다.

---

38) §246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39) 2015. 10. 27. 제안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17394호)

40) 2015. 12. 각주 3)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강남일)

더욱이 현재 상태에서도 채무자가 이직, 퇴사 후 재입사 등의 방법으로 급료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발표안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살기 위해' 회피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만일 위와 같이 된다면, 양육비 중 극히 일부를 지급받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채무자로 하여금 급료를 포기하게 하거나 적극적으로 회피하게 함으로써 양육비의 지속적인 추심을 불가능하게 하는, 즉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발표자께서는 발표안만으로도 충분히 위와 같은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보완책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배인구 변호사님께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단서[41]를 "다만, 그 금액이 …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 제1호에서 정한 청구권에 기한 압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양육비채권의 경우에는 급료에 대한 압류금지의 원칙(1/2)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발표하셨습니다.

급료가 300만 원 이상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현재 제4호 단서의 규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많은 사례는 채무자의 급료가 300만 원 이하로써, 최저생계비[42] 이상 압류를 하면 채무자나 그의 현재 가족이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양육비채권이 미성년 자녀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육비를 부담하는 채무자와 그의 현재 가족의 인간이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이 함께 망가져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이 아닐는지요. 그것은 함께 죽는 것이거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일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의 생계가 위험에 처하게 될 위험이 있다면, 그 부모는 양육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

41) 2005. 1. 27. 개정된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단서규정 신설.

42)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약 100만 원, 2인가구 약 170만 원입니다.

타당하므로, 이혼한 상대방으로부터 단돈 몇 만 원 내지 몇 십만 원을 받아 그 어려운 생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추가적인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으로 생활을 개선하고 보육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 300만 원 이하, 극단적으로는 150만 원 이하의 급료를 받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위 개정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 토론발표 ❷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관한 토론문

박 복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오늘의 논의는 급여압류를 통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고, 더 깊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법제도 개선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1. 주제발표의 취지

김은영 변호사님은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시면서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관한 입법례를 각국의 특징점을 중심으로 설명해주시고, 우리와 법체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일본에서 임금 등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범위를 일반채권과 다르게 규정한 점에 주목해야 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은 없지만 독일의 가장 특징점인 양육비선지급과 관련하여 2017년 법 개정으로 12세에 달할 때까지 최장 72개월 동안 선급하는 내용이 72개월이라는 최장 지급기간은 삭제되고, 일정 요건 하에서는 18세에 달할 때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김은영 변호사님은 현행 압류금지채권 규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육비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양육비채무자의 지나치게 보호하여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취지[43]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양육비채권은 보호 필요성이 크고, 양육비채무자는 그의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산정되고 그의 사정으로 양육비 변경도 가능하여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제한없이 압류하여도 양육비채무자에게 큰 침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권과 일반채권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에 근거한 압류명령을 통해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개별적인 특수상황을 양육비 채권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채권을 보유한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양육비 채권이 확보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양육비 채무의 불이행 시 제재를 통하여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지만, 제재를 받고서도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지급양육비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선방안은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으로 2015년 한차례 논의되었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사한 법안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즉, 채권자가 양육비 확보를 위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압류금지채권 중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입니다.

배인구 변호사님도 “임금채권에 대해 압류상한선이 있다는 것은 그 근로자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생활하는 가족까지 고려한 것이며, 같이 생활하면서 위법에 따라 그 생존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미성년자녀가 부모의 이혼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보호범위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인식과 함께 양육비채권과 임금채권이 상충할 경우 근로의 대가의 최우선 보장이라는 요청에 대한

43) 현행 규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 조화 및 채무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도의 생활보장이라는 목표에서 압류를 통하여 생활 곤궁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압류제한을 규정한 것이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관련법상의 특별한 고려는 미성년자녀의 양육권보장이라는 요구와 적정선에서 절충 내지 조화를 요하지만, 현행 법 상 관련 규정들이 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양육비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일부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에 대한 입법대안으로 양육비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2. 토론 의견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압류금지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구간	압류제한금액
150만 원 이하	급여채권 총액
150만 원 초과 ~ 300만 원 이하	150만 원
30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	급여채권 x 1/2
600만 원 초과	300만 원 + (급여채권 x 1/2 − 300만 원) x 50%

일정 금액의 급여채권에 대해 전액까지 압류가 금지된다는 것은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합니다.

가. 부양을 위한 특별한 고려의 필요성 강조

현행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한 취지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도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고, 채무자의 급여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현재의 가족구성원(같이 생활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사람의 생계 또한 보장하기 위한 고려입니다. 생계보장을 위한 몫을 떼어놓은 이후 이들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변호사님께서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통해 제시한 주신 공무원연금법 상의 압류금지조항을 살펴보면서, 공무원연금수급권 전부에 대해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법원이 조정할 여지를 두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관련 조문 상 “채무자등” 의 규정에서 ‘채무자와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 포함)’이라고 하여 압류금지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생계보장의 범위에 동거 여부를 떠나 의무적 부양범위에 속하는 직계혈족(양육비 문제를 다루는 여기에서는 직계비속, 즉 자녀)이 배제되어 있다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무적 부양범위에 속하는 직계혈족은 ‘동거 여부’를 떠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속하며, 일정 범위의 압류금지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부양범위에 속하는 자는 압류금지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도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 대비

또한 위 민사집행법상의 규정은 2011년 7월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으로 그 사이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즉, 2015년 7월 이후 절대적 빈곤선이었던 최저생계비 대신, 상대적 빈곤선 개념인 기준 중위소득으로 복지급여 선정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최저생계비 개념을 따르고 있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금의 신청기준이 되는 생계비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 개신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개념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환할 경우, 개인회생처리지침과 동일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압류금지 임금채권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비채권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더욱 절실해집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최저생계비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기준 중위소득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기준 중위소득 60%	1,003,263	1,708,258	2,209,521	2,711,521	3,213,152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공표한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다. 양육비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의 특례를 규정한 외국의 입법례

배인구 변호사님의 발표에서 일본의 입법례를 자세히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일본도 채무자의 급여 등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가 현저하게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민사집행법 제152조에서 압류금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에 관한 비용만은 제152조제3항[44]의 규정에 의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3/4에서 1/2까지 축소하고 있습니다. 즉, 1/4까지밖에 압류할 수 없었던 급여가 1/2까지 압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둔 배경에는 압류를 통한 이행확보의 강화, 절차부담의 완화, 부양에 관한 비용의 산정과정이 관계합니다.

첫 번째, 압류를 통한 이행확보의 강화입니다. 급여 등의 1/2까지 압류가 인정되는 것은 부양에 관한 비용뿐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다중채무에 빠져 다른 일반 채권자와

---

44) 일본 민사집행법 제152조③ 채권자가 전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의무에 관한 금전채권(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청구하는 경우에 전 2항의 적용은 전 2항 중 3/4은 1/2로 한다.

일본 민사집행법 제151조의2① 채권자가 다음에 열거하는 의무에 관한 확정기한의 정함이 있는 정기금채권을 갖는 경우에 그 일부에 불이행이 있는 경우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기금채권 중 확정기한이 도래하고 있지 않은 것에 관하여도 채무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1. 민법 제7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간의 협력 및 부조의무
2. 민법 제760조의 규정에 의한 혼인으로 발생하는 비용분담 의무
3. 민법 제766조(동법 제749조, 제771조 및 제7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의한 자의 감호에 관한 의무
4. 민법 제877조부터 제88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

압류가 경합해도 1/4까지만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일반 채권자에 비해 부양에 관한 비용의 채권자는 적어도 압류된 나머지의 1/4을 회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두 번째, 절차 부담의 완화입니다. 부양에 관한 비용에 처음부터 급여 등의 1/2까지 압류를 인정함으로써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부양에 관한 비용의 채권자는 절차부담이 완화됩니다.

셋째, 부양에 관한 비용 산정과정의 반영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명의가 필요하고, 채무명의는 기본적으로 법원 절차나 공증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여(혹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하여) 부양에 관한 비용이 정해집니다. 때문에 부양에 관한 비용으로 채무명의가 존재한다면 지급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급여 등을 1/2까지 압류해도 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일본과 같이 부양에 관한 비용의 강제집행 시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의 범위를 조정하는 입법을 도입할 경우 직접지급명령에 압류경합이 존재하는 경우 병합의 한도에서 우선변제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양육비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양육비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금지 부분에서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전(Code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oin) L.112-2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종류로 양육비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양육비 채권을 양육비 채무자의 임금에서 집행을 할 때 여러 채권이 경합할 때 집행 순서를 양육비 채권, 임금 압류 한도 내에서의 국세, 일반채권의 순으로 정함으로써 양육비의 우선변제를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45]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공공부조 상의 최저생계지원비(RSA, Revenu de solidarité active)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만일 양육자가 직접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없거나 양육비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계좌, 급여와 재산 등에 압류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양육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국세체납에 준하는 회수(recouvrement par le biais du trésor public)'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46]

---

45) Patricia BASS et al., *Le paye quotidien §170-40 Avis à tiers détenteur, créancier de pension alimentaire : qui payer en priorité et comment?*, Wolter Kluwer, 2018.

독일[47]의 민사소송법(Zivilprozessordnung)[48]도 제850조제1항에서 압류 시 근로소득의 보호원칙을 선언하고, 부양가족(최대 5인)의 숫자를 고려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압류금지 기본금액을 법률에 자세히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면서도(제850조의c), 제850조의d에서 부양청구권에 의한 압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민사소송법 제850조의d [부양청구권에 의한 압류]

① 법률에 기하여 친족, 배우자, 전 배우자, 생활동반자, 전 생활동반자에게 귀속하거나, 민법 제1615조의l, 제1615조의n에 따라 부모 일방에게 귀속하는 부양청구권에 기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49]과 제850조의a[50]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정

---

46)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의 공공서비스 안내 사이트 참조,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000 참조, 근거 법령은 '양육비의 공공회수에 관한 1975년 7월 11일의 법(Loi n° 75-618 du 11 juillet 1975 relative au recouvrement public des pensions alimentaires)' 이다. 원문은 프랑스 법제처 사이트,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8521&dateTexte=vig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47) 김경욱(金慶旭), 민사집행법의 개정내용과 그 방향-재산조회제도와 급여채권압류금지문제에 한정하여-, 민사소송 제9권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54-255면.

48) 2005년 12월 5일(BGBl. I S. 3202; 2006 I S. 431; 2007 S. 1781)

49) 독일 민사소송법 제850조 [압류시 근로소득의 보호] ① 금전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근로소득은 제850조a내지 제850조i의 규정에 의해서만 압류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근로소득이라 함은 공무원의 복무급여와 연금급여, 근로보수와 복무보수, 퇴직금과 근로관계에서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벗어나게 되어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과 유사한 계속적 수입, 유족급여와 채무자의 수익활동이 전체를 차지하거나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모든 종류의 용역에 대한 그 밖의 보수를 의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수입도 금전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a. 근로자가 그의 복무관계를 종료한 이후 기간 경업제한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급여

b. 보험계약이 보험수익자 또는 그가 피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경우 그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받는 연금

④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압류는 그의 명칭이나 계산방법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근로 또는 용역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보수에 대한 압류를 포함한다.

50) 독일 민사소송법 제850조a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할

한 급여는 제850조c에서 정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하 생략)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규정방식을 취하면서도 부양료에 속하는 양육비채권에 특별한 고려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아무런 고려 없이 양육비 채권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나라 고유의 특징을 반영하여 양육비 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한 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발표문에서 제안된 두 가지 개정방안 중 양육비채권임을 소명하는 경우 압류를 허용하는 방식은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을 이용할 경우 압류범위 조정을 위한 신청에 따른 결과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양육비채권자에게 압류를 위해 양육비채권을 소명하게 하는 절차적 부담을 지운다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배변호사님이 제안하신 양육비채권에는 압류금지범위에 관한 규정 자체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 없다.

1. 근로소득 중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2. 통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소득 이외의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 특별한 경영성과에 기한 임시급여 및 근속상여금
3. 통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비보상, 출장비와 기타 출장근무에 대한 특별수당, 자급근로자재에 대한 보상, 위험작업수당 및 어려운 작업에 대한 수당
4. 500 유로를 최고한도로 하는 1월 분 근로소득의 2분의 1 이하의 크리스마스수당
5. 집행이 혼인 또는 출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권 이외의 청구권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혼인 및 출산보조금
6. 교육자금, 학비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급여
7. 근로 또는 직무관계에 기한 사망급여
8. 시각장애인 급여

| 토론발표 ❸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토론문

노 지 선

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지원부장

1. 들어가며

2009년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을 통해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양육비 이행지원제도의 가장 변화된 정책 환경은 2015. 3. 25.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설치되어 출범한 것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이후 2018. 9. 30. 현재까지 양육비는 약363억 원이 이행되었고, 양육비 이행률[51]은 2015년 21.2%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약 32%에 이릅니다. 또한 법제도 측면에서는 2018.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사건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는 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51) 양육비이행관리원, (2015년) 21.2% → (2016년) 29.6% → (2017년) 32.0% → (2018년 9월) 31.9%

이러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약 70%의 양육비채권자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환기되는 이 시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참여하게 해주신 진선미 의원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에서는 부족한 식견이지만 양육비를 추심하는 과정에서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민했던 내용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 급여채권을 통한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 및 개선에 대하여

앞서 발제자께서 발제하신 대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들 중 특히 급여채권은 양육비 이행을 직접 강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히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저는 본 심포지엄의 주제인 압류금지채권의 예외를 완화하여 추심할 수 있는 금액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제자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150만원[52] 미만의 채무자 최저 생계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일률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3채무자인 여러 은행들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각 은행 별로 150만원 미만의 예금 잔액이 남아 있지만 통합 잔액은 1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추심할 수 없고, 이를 추심하려면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53]에 따라 추가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52)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15. ~ 11.5)
- 생계비와 급여, 예금액의 압류금지 최저한도를 18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53)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것은 미성년 자녀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54]에 따라 국가기관이 아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식 결정을 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헌법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임과 동시에, 자녀가 정상적인 사회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하는 부모의 헌법상 의무이고, 부모의 양육에 따라 자녀가 누리는 이익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법익[55]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채무자의 생존권 보다 결국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먼저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경제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압류를 가능하게 하고 채무자가 이를 다투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률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중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채권'에 대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다소 우려를 표합니다. 양육비 외 다른 부양료 역시 생존권의 문제이고, 압류금지채권으로 임금채권과 부양료채권이 병렬적으로 규정된 취지를 들어 압류금지채권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기술하신 것으로 사료되지만, '부양료'와 '양육비'를 구별하는 법원[56]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양육비'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그 해석에 대해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54)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 1.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 활동이 공적 또는 사적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부 혹은 입법부 등 어떠한 기관에 의해 행해지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양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55)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6헌마260 결정 위헌의견 참조

56)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결정),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결정)

추가로 급여, 예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57]에 대해서도 압류금지채권의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나 예금이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보증금 역시 최우선 변제 보증금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 (예를 들자면 2,000만원 초과 부분에 한하여)은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양육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는 대부분 사건들은 과거 양육비 채권의 추심과 장래 양육비 채권의 확보가 모두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과거 양육비'는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장래 양육비'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행 제도는 '과거 양육비'는 일반 '민사집행법 상의 강제집행인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장래 양육비'는 2009년에 도입한 '직접지급명령'으로 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전에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직접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채권 전부에 효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58].

간단히 설명하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가 300만원인데,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가 2,000만원, 장래 양육비가 월 5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우선 장래 양육비에 대한 월 5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 5. 20.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은 이후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 2,000만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차의 번거로움보다도 양육비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문제입니다.

2017. 5. 20. 직접지급명령 이후 2017. 6. 5.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57) 서울특별시 3,400만원,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등

58) 가사소송법 제 6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제232조 참조

추심명령 전인 2017. 5. 25. 채무자가 퇴사하여 2017. 6. 2.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는 퇴직금 채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퇴사가 아닌 제3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면 급여 채권의 금액을 안분하여 추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할 수 없는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양육비채권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양육비 채무자가 소규모 회사에 다니고 이직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지급명령보다는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더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59]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직접지급명령이 도입된 취지와 법 규정을 보면 다소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을 규정한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단서는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에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만으로 직접지급명령이 반드시 '장래 양육비'에 한정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반대 해석을 해보면 '장래 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사소송법의 규정이 과거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도 신속한 이행을 받고자 하는 취지라면 이미 기한이 도래한 채권 즉, '과거 양육비' 채권도 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학계의 견해[60]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양육비'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논거[61] 역시 기존의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르면 된다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할 때, 자녀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취지, 신법(혹은 특별법) 우선 원칙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

59)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23%, 급여 및 퇴직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77% (2015. 3.~2017. 12. 기준)

60) 김연,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소송법적 연구 107면

6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 [Ⅰ] 295면, (2010)

있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자는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신속하게 이행 받을 수 있고, 채무자 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역시 소송 1번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기존 절차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직접지급명령은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퇴직금'에 대해서는 실무상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분쟁의 1회적 해결 및 신속하고도 공백 없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 소결 – 양육비 채권의 특수성에 따른 추후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 방향

양육비는 소액의 정기금 채권이어서 시간적 공백 없이 이행이 되어야만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회사라도 다니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없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상 감치명령이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인데, 이행명령을 거치거나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을 거쳐야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러다보니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이르러 장기화되는 소송기간만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계속하여 미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1회 추심으로 종결되는 일반 민사채권보다 우선하여 보호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본 심포지엄의 주제인 급여채권 및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채권 규정 및 직접지급명령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미국의 급여공제제도, 해외 여러 나라에서 운영 중인 제재조치 도입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미성년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바삐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토론발표 ❹ |

민사집행에서 왜 양육비채권에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가

오 영 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법무사

1. 들어가며

오래전부터 현장에서 필요성을 이야기해온 양육비채권의 압류금지채권규정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님과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현천욱 이사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계기로 논의가 활발해져 민사집행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2. 압류금지최저한도액 인상안 입법예고

2018.10.15.에 법무부에서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62], 제3조[63] 제[64]7조에 규정

62)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63)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된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이유에서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최저 생계 수준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65]과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약탈적 집행을 방지하고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개정안은 별다른 이견이 있지 않으면 입법예고를 거쳐 2019.1.1.부터 시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급여에 대한 압류금지최저한도액 상향은 이 토론회의 주제인 압류금지채권 규정 개선의 필요성을 더 크게 해준다. 현재 급여 중 150만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데 그 액수가 180만으로 커진다면 양육비채권의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3. 민사집행의 예외 -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발제문에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에 대해 민사집행의 전제인 이행기 도래가 충족되지 않았어도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언급되었다. 이는 이미 양육비채권에 민사집행의 예외를 인정하는 하나의 예이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주된 개정이유는 절차의 간편화에 있었지만[66] 이행기가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를 규정한 것이며 이행기가 이르

---

64)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65)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월급 1,745,150원

66) 직접지급명령 신설이유: 양육비의 확보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건임에도 그 액수의 소규모에 비하여 현행법상의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인바, 이에 따라 보다 간편한 양육비의 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심판에서의 재산명시 절차 등과 양육비의 직접 지급명령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기 전에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에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집행을 허용함으로써 양육비채권자의 입장을 우위에 둔 규정이다. 이는 양육비채권이 일반적인 채권과는 민사집행에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4. 양육비채권의 성립과 집행 -압류금지 범위변경을 채무자 구제책으로 적극 활용

발제문에서 소개한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6헌마260 결정의 압류금지조항의 위헌의견에서 "양육비를 법원이 정할 경우 부모의 소득 등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므로, 다른 채권에 비하여 양육비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무원연금 수급권에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수급권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는 적다." 고 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해관계에 대한 조절을 거쳐 정해지므로 당사자의 수입 및 생계(자녀의 생계도 포함하여)는 이미 중요하게 반영되었다. 그러므로 압류금지규정이 우려했던 취지인 채무자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여지는 적다. 오히려 양육채권자와 자녀의 생계를 위한 양육비집행이 압류금지규정에 가로막혀 집행이 어렵게 됨으로써 채권자와 자녀의 생계가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압류금지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결과이며, 압류금지규정에 양육비채권의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게 한다. 현실에서 이러한 불합리가 있어 한부모, 미혼모 당사자들은 그동안 이 문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압류금지채권에 양육비채권의 예외를 인정하여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금지최저한도액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당사자 협의나 법원의 판단 이후에 사정변경으로 채무자의 기본생계가 위태로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책은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3항[67]의 "생활형편 및 그밖의 사정"으로 인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활용하여

67)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3항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채무자의 기본생계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은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빈번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8호[68]의 경우이다.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이 금융기관별이 아니고 전체 예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소명이 쉽지 않아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3항의 "그밖의 사정"을 소명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하는 예가 많다.[69]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채무자의 적절한 구제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육비채권에 민사집행의 압류금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한 이유는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취지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의 조화 및 채무자와 가족의 최소한도의 생활보장이라는 근거가 양육비채권 성립과정에서 이미 당사자간 협의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행절차에서는 양육비채권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양육비채권자와 자녀의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며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이 어려울 경우의 구제책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협의 및 재판	집행	압류금지범위 변경
일반채권	권리확정	채무자의 **생계고려** - 압류 금지채권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및 그밖의 사정 고려
양육비채권	권리확정 및 **생계 고려**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및 그밖의 사정 고려

68)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9)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예: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의 기준이 금융기관별 150만원의 예금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체 예금 중 150만원의 예금으로 해석되므로 ①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예금지급을 할 수 없고, ② 채무자의 전체 예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느 계좌의 예금액이 압류에서 제외되는지도 불분명하다.

5.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배인구 변호사의 발제문과 이은영 변호사의 발제문에서 각각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취지는 동일하나,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청구채권	적용범위
배인구 변호사 개정안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1호의 채권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8호의 단서
이은영 변호사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확보를 위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청구채권을 제246조 제1항 제1호의 채권으로 하였을 때는 민사집행법의 같은 조문상의 채권이므로 생계보장을 위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채권이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최근 양육비채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고 아동의 생계와 직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육비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간명하고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압류금지채권에 양육비채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적용범위를 제246조 제 4항 전체조문으로 할 것인지, 단서에 국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70] 단서로 국한했을 때는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채권의 취지를 존중하고 있어 반대의견과의 조화를 이루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6. 양육비채권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제기

오늘의 논의는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의 개선에 맞추어져 있지만 이

70) 각 의견에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 1항 제8호와 제 5호를 적용범위에 추가하였으나 이는 제4호의 논점에서 부수하는 성격이 강하여 편의상 제4호 전체조문과 단서에 국한하여 적용범위를 논하는 것으로 하였다.

후 양육비채권의 강력한 이행확보를 위해서는 양육비채권의 법적지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 법제하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담보물권이 아닌 채권에 우선변제권 등의 특별한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등이 있다.

이는 서민의 생활유지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안정내지 사업안정, 최소급여의 확보를 통해 서민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의한 것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생계를 보장할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기에 물권이 아닌 이들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일정범위 내에서는 물권에 앞서는 보호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양육비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의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최소한의 생계비에 해당되며, 양육에 필요한 시간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당사자의 근로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주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할 만한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육비의 확보에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자녀의 생계에 직결되는 양육비채권을 일반 사적 채권채무관계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여타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과의 형평성에 비추어도 양육비채권에 임금채권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71]

자녀의 양육은 각 부모의 법적의무이지만 동시에 미래사회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 의무이기도 하다. 이들 자녀들은 현재 우리사회의 동등한 구

71) 20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혼모포럼 오영나 “양육비 집행절차와 이행확보방안”

성원이요, 미래사회에서 사회의 주축이될 세대이므로 국가와 사회의 미래는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양육비채권의 이행확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문제라는 점에서 양육비채권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 토론발표 ❺ |

상담과 소송구조를 통해 본 양육비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문제점과 제언

최 수 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I. 서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관심을 가지고 양육비 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구조와 법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2001년 4월 양육비에 관한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심포지엄도 개최하였다.[72] 이러한 조사 연구를 기초로 양육비 채권 이행 확보에 관한 법률안과 양육비 선급 법률안[73]도 발의한 바 있었고, 이후에도 양육비 이행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 활동을 활발히 벌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

72) "양육비 제대로 받고 있는가(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 실태 및 의식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2001년 5월 3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개최; 상담소에서 실시한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기반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으로 이를 통해 상담소는 우리 사회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하였다. 해당 조사는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 현실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조사라는 점에서 주요한 의의가 있다.

73) 김재경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72547, 2005. 9. 1., 임기만료폐기

육비 이행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상담과 지난한 재판과정을 거쳐 양육비채무자의 봉급을 압류하고자 하였으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좌절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자녀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임에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양육비 상담과 소송구조를 지원하는 현장에서 이러한 한계에 부딪칠 때마다 양육비채권은 어떤 채권이나 권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II.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직접지급명령의 실제 활용도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의 본안 및 집행사건의 비율[74)]

상담소의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을 살펴보면, 2015년 양육비청구 등 본안사건의 비중이 68.7%에서 2018년 24.7%로 줄었다. 반면, 양육비이행 및 집행 사건의 비율은 2015년 31.3%에서 2018년 75.3%로 증가하여, 이행 및 집행이 양육비 소송구조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소를 통해 양육비청구를 한 내담자의 집행권원 확보가 일정 수준 이루어졌고, 또한 2009년 5월 도입된 양육비부담조서제도로 인하여 별도로 양육비청구를 하지 않고 곧장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집행권원을 받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비양육자(양육비채무자)와 반복적인 집행 절차를 소모적으로 거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양육비소송의 핵심은 집행절차의 성공에 있

74)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추이(2015-2018)

연도	전체	본안	집행		
			총계	간접강제	직접강제
2015년	151건	104건	47건(전체 중 31.3%)	28건	19건
2016년	99건	40건	59건(전체 중 59.6%)	33건	26건
2017년	110건	59건	51건(전체 중 46.4%)	37건	14건
2018년(현재)	85건	21건	64건(전체 중 75.3%)	43건	21건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집행사건 내 간접강제와 직접강제집행의 비율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집행사건은 여전히 간접강제수단(이행명령신청, 과태료, 감치 신청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 확보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직접강제(부동산압류, 동산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직접지급명령신청 등)의 소송구조 비율은 2015년 19건(전체 중 12.6%, 집행 중 40.4%)에서 2018년 21건(전체 중 24.7%, 집행 중 32.8%)으로 전체 양육비사건의 10-20%, 집행사건의 30-40%선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것은 복잡한 절차를 통해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비양육자(양육비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비양육자(양육비채무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급여가 압류금지채권 범위 안에 해당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행명령 등 간접강제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내담자들을 상담해 보면, 좋지 않은 감정으로 헤어진 비양육자(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하고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한다. 혹시 몇 달 기다려보면 양육비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다려보고, 혼자 고민하다, 비양육자(양육비채무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발뺌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면, 법률상담, 나홀로 소송을 해보면서 지칠 대로 지치게 된다. 그러다 양육비 소송구조로 월급 압류라는 실효성 있는 법 조치를 찾았다고 기대를 하였으나, 비양육자(양육비채무자)의 월급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어 또 다시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Ⅲ. 압류금지채권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송구조, 상담 사례

상대방이 급여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를 살펴보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적용이 실무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1.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

내담자 : 여성, 40대, 서울, 서비스업, 월수입 130만 원 상대방 : 남성, 50대, 포항, 회사원, 월수입 400만 원 이상 자녀 : 13세, 15세

내담자와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혼 당시 양육비액수는 정하지 않았다. 내담자는 이혼 후 방문판매, 마트직원 등 여러 일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해왔다.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내담자는 양육비 청구를 통해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도록 되었으나, 상대방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내담자는 상대방이 00회사에 다니며 적지 않은 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황급히 퇴사하였고 현재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로 직장을 옮긴 상태이다. 내담자는 다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직접지급명령의 경우 150만 원 이하 급여를 받는 경우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친척에게 본인 소득을 150만 원 이하로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본인 명의가 아닌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담자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일부의 양육비밖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

내담자: 여성, 40대, 서울, 어린이집 교사, 월수입 140만원 상대방: 남성, 40대, 서울, 회사원, 월수입 280만원 자녀 : 15세, 13세, 10세, 6세

이혼 당시 상대방은 자녀들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혼 후 상대방은 연락도 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내담자는 2-3개의 직업을 갖고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상대방이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하여 월 280만원 가량의 소득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담자는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지만, 양육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되는 130만원에 불과하여, 양육비

전액을 받지는 못하였다.

3.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자 회사를 그만 둔 사례

내담자 : 남성, 20대, 서울, 무직 상대방 : 여성, 20대, 서울, 미상 자녀 : 8세

내담자와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며 자녀의 양육비로 상대방이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간헐적으로 보내온 양육비 7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자녀의 선천적 지병으로 인해 병원비 및 교통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내담자는 미지급된 과거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과 함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당시 상대방은 주식회사 ▲▲에 사내이사로 취임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직접지급명령이 결정되자마자 이를 사임하였고, 내담자는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4. 상대방이 다니던 회사를 압박하여 양육비를 받은 사례

내담자 : 여성, 40대, 서울, 자영업, 월수입 100만 원 상대방 : 남성, 40대, 수원, 회사원, 월수입 130만 원 자녀 : 14세, 16세

이혼 당시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40만원을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조정이 성립하였다. 상대방은 조정조서에 따라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늦게 지급하거나 의무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에 내담자는 상대방의 직장을 확인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인 **학원은 상대방이 퇴직할 때 지급을 하겠다고 지급을 거부하고, 상대방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양육비를 공제한 급여만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압박하여 압류된 급여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압류금지채권의 규정에 대한 오해로 지급자체를 꺼리는 회사로 인하여 내담자가 양육비를 지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IV. 양육비채권의 특수성

1.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취지와 미성년자의 복리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취지는 채무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이러한 채무자의 기본적 생활비에는 이혼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미성년자녀의 생활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혼을 하여 자녀를 키우는 채무자가 양육비집행을 받은 경우, 현행법 규정에 의하면 압류금지채권으로 인하여 재혼자녀의 기본생활은 보호되는 반면, 이혼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미성년자녀의 기본생활을 보호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동거하는 미성년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미성년자녀의 생활비를 다르게 규율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압류금지채권 규정이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녀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개인파산제도에서의 양육비채무

주제발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생계보장과 갱생이 가장 강조되는 제도인 개인파산제도에서조차도 양육비채무는 조세, 벌금, 임금 등과 함께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곧, 양육비채무는 그 성격상 일반채권이 아닌 조세에 준하는 의무라는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V. 개정안에 관한 의견

양육비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의 예외여야 한다.

1) 양육비채권을 압류금지채권의 예외로 하는 법 개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양육자(양육비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압류금지채권 규정을 양육비채무를 빠져나갈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오히려 비양육자(양육비채무자)에게 합법적으로 양육비 책임을 면제해 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부작용마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공표 이후 5년 사이 이미 당사자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기준이 되었고, 양육비 액수의 현실화와 자발적인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은 양육비 지급기준으로 자리매감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문제점

이 있다. 따라서 양육비채권을 압류금지채권의 예외로 하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문제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채무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양육비 채권자, 보다 본질적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양육비채권자의 사정을 헤아려 압류금지의 예외를 인정할 듯이 보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일반 채권자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양육비채권자에게 신청과 입증의 부담을 주는 조항이다. 양육비채권을 압류금지채권의 예외로 하는 법 개정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입증책임을 비양육자(양육비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채권자의 채권 만족과 비양육자(양육비채무자)의 긴급한 사정과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VI. 마무리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양육비 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조항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으로써 어려운 사정에 처한 한부모 가족과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구현되길 기대한다.